■ 법률 칼럼

밀입국자의 영주권 신청

1. 601 A 면제를 통한 영주권 취득

현 이민법 아래에서는 이민과 세관을 거치지 않고 국경 등으로 밀입국을 하신 분들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거나, 또는 시민권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밀입국에 대하 불법성을 면제(601A)를 받아야 하고, 면제 후에 한국으로 출국하여 미국 해외 공관에서 인터뷰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불법입국한 많은 한인들이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또 시민권자 자녀들을 두고 있는데도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90년 초에 개정된 현행 이민법은 신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비자 신청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단 출국하게 되면 1년 이상 불법체류의 경우 10년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되어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불법입국/불법체류의 불법성 면제를 통해 본국에서 영주권을 무사히 받고 입국할 수 있도록 해 주는 601A 면제가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승인 요건

1) 이미 승인이 난 이민 청원서(Petition)가 있어야 이를 근거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601A 면제 신청인에게 시민권자/영주권자 직계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3) 601A면제 신청인이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시민권자/영주권자 배우자나 부모님이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을 겪게 되신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2. 미군 가족인 밀입국자의 영주권 신청(자녀나 배우자가 미군인 경우)

불법입국자라 하더라도 자녀나 배우자가 시민권자로 미군에 복무했거나 복무 중인 경우, 미국 내에서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법률 용어로 Place in Parole이라고 합니다.

모든 합법 입국자에게는 I-94라는 출입국 번호가 부여됩니다. 이 출입국 번호는 합법적 입국(Legal Entry)을 증명하는 중요한 번호입니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는 이 합법 입국만 증명되면 현재 서류미비(undocumented: 불법체류)자의 경우도 미국 내에서 시민권 배우자나 자녀의 이민청원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밀입국자의 경우에는 이 I-94 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601 A 면제를 통해서 밀입국의 불법성을 면제(10년/3년 입국 금지의 면제) 받은 다음 한국으로 돌아가 대사관 인터뷰(Consular Process)를 통해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밀입국한 분들의 시민권자 배우자나 시민권자 자녀가 미군에 복무하고 있거나 미군에서 명예제대를 한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그 배우자/자녀의 이민청원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배우자/자녀 immediate family member)이 시민권자이고 미군에 복무 중이거나 전역한 것을 근거로 이민국에 Place in Parole을 신청하고 그것을 이민국이 승인을 해 주면 이민국이 꼭 미국에 새로 입국한 것처럼 새 I-94 입국 번호를 부여해 줍니다. 그리고 이 번호를 가지고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자녀의 이민청원(Immigration Petition)을 통해서 한국으로 출국 없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취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서는 밀입국자들 중에 시민권자 자녀가 미군에 복무 중인 경우로 많은 분들이 위에 소개해드린 제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밀입국을 하신 분들 중에 자녀나 배우자가 미군에 복무 중이신 분들은 변호사나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3. 245 (i) 를 통한 밀입국자의 영주권 신청-

2001년 4월30일 전에 이민청원 (Labor Certification 포함)이 접수된 것을 증명할 수 있고 또 그 청원이 승인 가능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가족, 고용인 등이 영주권을 스폰서 해 주는 경우에는 밀입국을 하셨더라도 벌금 1,000불만 내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 OC Office: (714) 522-5220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 전문의 칼럼

지방간과 간질환

간은 우리 몸의 대사과정에 관여하는 장기로서, 섭취한 음식물들을 각종 조직에 필요한 형태의 에너지로 변화시키고 남은 노폐물들을 다시 운반하며 해독 작용을 하는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신체 기관입니다.

비알콜성 지방간질환(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FLD)은 과도한 알콜 섭취 등의 이차적으로 간에 지방을 축적시키는 원인 없이 알콜성 지방간과 유사한 조직 소견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비알콜성 지방간도 간경화로 진행할 수 있기때문에 특발성(cryptogenic) 간경화의 주요한 원인으로 생각되며 특히 서구사회에서 가장 흔한 간질환입니다.

미국에서 비알콜성 지방간은 유병률이 10-46% 정도로 연구되는데 이는 비알콜성 지방간의 흔한 원인인 복부미만, 이형당뇨, 이상지질혈증 및 대사증후군이 서구사회에 더 많이 있기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비알콜성 지방간질환(NFLD)는 비알콜성 단순지방간(NAFL)과 비알콜성 지방간염(NASH)으로 나누어 집니다. 비알콜성 단순지방간(NAFL)은 대체로 양성질환이며 간에 지방은 축적되지만 염증은 생기지 않는 반면, 비알콜성 지방간염(NASH)은 간에 지방 축적과 함께 염증이 동반됩니다.

비알콜성 단순지방간(NAFL)은 대부분 증상이 없으며 복부초음파 등에서 우연히 발견됩니다. 특별한 치료약은 없으나 과체중이나 비만한 분들의 경우 체중 감량으로 간에 축적된 지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알콜성 단순지방간(NAFL)은 비알콜성 지방간염(NASH)로 진행하지 않으며 극소수에서는 염증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알콜성 지방간염(NASH)은 간 내에 지방 축적만 일으키는 비알콜성 단순지방간(NAFL) 과는 달리 염증 반응으로 간에 섬유화를 일으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당뇨, 비만, 인슐린저항성 등의 질환을 가진 사람에서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환자의 20% 정도가 간경화로 진행하고 이후 간암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제약회사에서 비알콜성 지방간염(NASH)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비알콜성 지방간염(NASH)을 완치시키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현재로서의 치료는 관련된 만성질환(당뇨, 비만, 고지혈증)을 잘 관리하고 체중을 줄이며 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약물이나 주류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Vitamin E가 간의 손상을 줄여준다는 연구가 있으나 그 증거가 약하고 또한 고용량을 먹을 경우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가 있어 조직 검사상 섬유화 2기 이상일 경우만 선택적으로 고려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커피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

또한 비알콜성 단순지방간(NAFL)과 비알콜성 지방간염(NASH)으로 진단을 받을 경우 A형간염과 B형간염 항체가 없을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성현 내과 보드전문의
(714) 562-9139
6131 Orangethorpe Ave, #150A
Buena Park, CA 90620

메디케어 가입 페널티 요주의

김예자 공인 에이전트

미국에서 소셜 연금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메디케어이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인 김예자 에이전트에 따르면 특히 파트 A는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매월 내야 하는 프리미엄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미리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메디케어는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한다.

지연 기간의 2배 기간동안 년 10% 벌금

• 파트 A 프리미엄과 페널티
메디케어 텍스 크레딧이 40점 이하인 경우 본인의 텍스 크레딧에 따라 매월 프리미엄을 내고 가입해야 한다. 또한 파트 A 가입을 지연하면 늦은 기간 2배의 기간동안 월 10%의 페널티를 내야 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크레딧 점수	1점~29점	30점~39점
매월 프리미엄	$506	$278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동안 지불해야

• 파트 B 프리미엄과 페널티
파트 B 보험료는 2023년 현재 164.90달러이다. 파트 B 또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하는데, 파트B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년에 10% 페널티를 평생 내야하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65세 생일 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

• 파트 D 페널티
파트 D 또한 마찬가지로 65세 생일달 3개월 전 후로 가입해야한다. 가입을 지연 신청하게 되면 1개월에 1%씩 페널티를 평생내야 한다. 김예자 에이전트는 "간혹 메디케어 상담을 받다 보면 65세에는 건강해서 약이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약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70세쯤 약이 필요해서 약보험을 문의 하시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5년동안(60개월) 가입지연에 따른 60%의 페널티를 평생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케어 파트 D 지연 신청 페널티 면제

• Extra Help(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대부분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은 소셜 연금이 주수입원이 되므로 Extra Help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Extra Help 자격이 되면 메디케어 파트 D지연 신청에 따른 페널티를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처방약 또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Extra Help 자격

Income & Resources	Single	Couple
Monthly Income	$1,822	$2,465
Asset Limit	$16,660	$33,240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소셜연금, Extra Help,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상담 및 신청
Covered California 공인 에이전트
KIM YEJA (김예자)
Lic# 0F07964
T. 562.640.0643 714.773.2939
E-mail : 6400643@gmail.com
LEE JIHOON (이지훈)
Lic # 4276029
T.714.872.9377